고창군 공고 제2023-1126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2차)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한 「2023년 고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2023. 5. 31.

고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 대상) 고창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www.mecar.or.kr(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참고2]예시 참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원동기 기준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정격출력 1PS≒0.74KW로 환산예정)

○ (사업 예산) 2,544백만원 ○ (사 업 량) 1,000대(변동 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23. 6. 1.(목) ~ 예산소진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자 선정) 신청일자 기준 1개월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선정 통보
- 지원대상 조건 모두 충족자에 대하여 접수번호가 빠른(선착순) 순서로 결정. (다만, 같은 날 예산 초과 접수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신청 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① 인 터 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우 56433)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5, 환경위생과
③ 방문접수: 차량 사용본거지 행정복지센터[읍(환경미화팀)·면(맞춤형복지팀)]

○ (보조금청구방법)
- 차량 사용본거지 행정복지센터[읍(환경미화팀)·면(맞춤형복지팀)]에 청구서 제출
- 보조금 지급청구 기한(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폐차는 2개월, 추가구매는 4개월 이내)

2 지원대상

가. 조기폐차 기준 : ① ~ ⑤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도로용3종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 전 성능검사업체** 통해 **대상차량 확인서 및 사진(전후좌우 각 1컷)** 제출(**미제출 및 부적합 판정 시 보조금 지급 불가**)

④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완납하여야 폐차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나. 우선지원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예산초과 접수 시 우선 지원

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나.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5등급 차량

라.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른 영업용차량 또는 건설기계

마.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사.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신청하였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3 지원절차

가. 세부절차

1 조기폐차 신청	➡	2 사업대상여부 검토	➡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4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23.6.1.~예산소진시 (소유자 → 군)		사업대상 여부 및 매연저감장치 미장착 확인 등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군 → 소유자)		성능검사업체(일반)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건설기계)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진

5 보조금 청구 및 말소등록증 제출	➡	6 보조금 지급	➡	7 차량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8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통보일 기준 2개월 이내 (소유자 → 군)		청구 후 정상가동차량에 대해 1개월 이내 지급		대상통보일 기준 4개월 이내 (소유자 → 군)		청구 후 1개월 이내 지급
*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나. 신청서 접수 방법 및 구비서류(가.세부절차-1 조기폐차 신청 관련)

인 터 넷	○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3, 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참고 4]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55, 환경위생과**
방문접수	○ **차량 사용본거지 행정복지센터[읍(환경미화팀), 면(맞춤형복지팀)]**

<조기폐차 신청 시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 **(개인)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해당자만) 저감장치 장착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확인서
※ (공동명의) 신청자 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참고1] 및 인감증명서 1부
※ (지입차량) 위·수탁 계약서 사본, 위임장[참고1]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실질적인 소유자(개인)에게 보조금 지급 가능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 지자체 직접 확인 또는 저감장치 제작사 발행 확인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 제출서류>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하며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소상공인 해당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 업종별 최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1년 당 전국 지원가능 횟수 제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년, 그 외 4대/년)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중복 지원 불가**

다. 차량상태확인 검사(가.세부절차-4 대상차량 확인 관련)

구 분	절차대행자	확인 후 제출자료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제출)
건설기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등	**[별지 제3호 서식]대상차량확인서** 및 **사진(전후좌우 각 1컷)** * 지게차 굴착기의 경우 [참고3]의 절차 참고 * 별도 수수료 있음
건설기계 외 4·5등급 차량	성능검사업체	

※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의 소유자 등은 폐차업소로 이동하기 전 고창군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주기장 등에서 원동기 등 시운전을 통한 가동상태를 확인받고 폐차업소로 이동하여야 함 (다만, 폐차업소 내에서 소유자 등이 시운전이 가능한 경우는 폐차업소로 이동 후 확인받을 수 있음)

라. 관내 차량상태확인 추천 절차대행자(지게차, 굴착기 제외)

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1	㈜서부현대서비스	063-562-7993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636-6
2	우리자동차공업사	063-564-5511	고창군 고창읍 덕산길 59
3	광진공업사	063-564-2723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8
4	고창자동차공업사	063-564-2600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051-7

※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 제외)은 차량상태 확인 당시 자동차관리법상 자격(업)을 유지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첨부할 경우 절차대행 가능하며, 위반사항 있을 시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

마. 관내 폐차업 현황

※「자동차관리법」등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타시도 폐차장 이용 가능

업 체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고창우리폐차장	063-562-9999	고창군 신림면 고인돌대로 2165

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류(가.세부절차- 5 보조금청구 관련)

: [별지4호서식]에 따라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4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군 발급)[별지 제2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절차대행자 발급)[별지 제3호]
◎ 차량 사진 4매(전후좌우) (절차대행자 발급)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건설기계 등록말소 확인증명서 1부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별지 제5호]

사. (차량구매 후) 추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류(가.세부절차- 7 추가보조금 관련)

: [별지6호서식]에 따라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내 제출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별지 제6호]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조기폐차 시 지원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상한액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 아님

가.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단위 : 만원)

<table>
<tr><th colspan="3"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상한액
(기본+추가 지원)</th><th colspan="3">지원율</th></tr>
<tr><th>5등급</th><th>4등급</th><th>기본</th><th colspan="2">추가 지원</th></tr>
<tr><td rowspan="6">4·5등급
자동차</td><td rowspan="2">총중량
3.5톤 미만</td><td>승용(5인승 이하)</td><td>300</td><td>800</td><td>50%</td><td>50%</td><td rowspan="2">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지원</td></tr>
<tr><td>그 외</td><td>300</td><td>800</td><td>70%</td><td>30%</td></tr>
<tr><td rowspan="4">총중량
3.5톤 이상</td><td>3,500cc 이하</td><td>440</td><td>720</td><td rowspan="4">100%</td><td colspan="2" rowspan="4">200%(신차)
100%(중고차)</td></tr>
<tr><td>3,500cc 초과
5,500cc 이하</td><td>750</td><td>1,600</td></tr>
<tr><td>5,500cc 초과
7,500cc 이하</td><td>1,100</td><td>2,400</td></tr>
<tr><td>7,500cc 초과</td><td>3,000</td><td>7,800</td></tr>
<tr><td colspan="3">*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td><td>4,000</td><td>10,000</td></tr>
</table>

※ (지원예시) 총중량 3.5톤 미만의 5등급 승용(5인승 이하) 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이 340만원(상한액 초과)인 경우, 상한액 300만원의 폐차 시 기본 지원율 50% 적용해 150만원 지원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150만원 지원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다만, 매연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5)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시)

6)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나. 굴착기 및 지게차

(단위 : 만원)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차량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2) 조기폐차 대상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건설기계)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시 추가 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되며,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 되어야 인정

3)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 지게차 폐기 후 굴착기 구매 및 굴착기 폐기 후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지게차, 굴착기는 신차(200%)만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 조치**될 수 있음

다. 추가 보조금지원 상세기준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 단위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1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신규로 구매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동일한 원동기 형식의 배기량 환산값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폐차되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배기량 보다 작거나 10% 범위 이내 증가 인정 ⇒ 환산값 확인 방법 :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DPF 부착가능차량(2006.02.01.)첨부자료]

구분		신차 및 중고차 지원기준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제작사 출고 지연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청구기한 연장**
- **청구기한 내 매매계약서 및 출고지연확인서**(성명, 생년월일, 차종 및 연료, 계약일, 출고예정일, 지연사유 기재) 제출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 등의 의무운행기간(2년)** 및 **회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르며, 지자체장은 차량의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이 발생되어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받아 예외 적용 가능

구분	발급기관(예시)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 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신청 전 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확인)

5 보조금액 산정기준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6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5년 차량가액은 '06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 '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⑥ 기타 유의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3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고문 내 문구의 해석이 신청자와 상이할 경우 담당부서의 해석을 원칙으로 함.

◎ **반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해야하며, **폐차하기 전에 조기폐차 사업용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차량상태 확인 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

◎ **폐차는 자진말소만 가능**하며, 수출말소 및 차량초과말소는 불가능 함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시 보조금지원 불가**

◎ 민원방지를 위해 고창군 외 운행 차량은 해당 타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대상 차량확인(차량상태) 가능

◎ **소유자 통장(계좌)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제출**하여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함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구매 보조금 지원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보조금 지급청구 기한**(대상자 선정일 기준으로 폐차는 2개월, 추가구매는 4개월 이내) **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추가 구매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고창군청 환경위생과(☎063-560-2876)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7. [참고 1] 위임장 1부.
8. [참고 2] 포기서 1부.
9. [참고 3]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촬영 매뉴얼 1부.
10. [참고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체크(굴착기/지게차) 1부.
11. [참고 5] 인터넷 접수방법 1부.
12. [참고 6] 차량 등급 조회 끝.

[별지 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⑥등록번호		⑦차대번호	
	⑧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건설기계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정기·종합 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이전 폐차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수수료
공통서류	1.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없음
해 당 자	○(공동명의) 위임장, 소유자 각각의 신분증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소상공인 소유차량)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명시된 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아래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본인은 동 사업의 보조금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생년월일 등을 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2호서식]

<table>
<tr><td>확인번호</td><td colspan="7">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FAX</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 자동차
☐ 건설기계</td><td>차명(건설기계명)</td><td colspan="2"></td><td>형식</td><td colspan="2"></td></tr>
<tr><td>정원(승합)</td><td colspan="2">명</td><td>중량(화물)</td><td colspan="2">☐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td></tr>
<tr><td colspan="3"></td><td>규격(건설기계)</td><td colspan="2">☐ ( )</td></tr>
<tr><td colspan="6">☐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td></tr>
<tr><td rowspan="6">확 인
결 과</td><td colspan="2">지급 여부</td><td colspan="2">☐ 가 ☐ 부</td><td>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td><td>☐ 부착가능
☐ 부착불가</td></tr>
<tr><td colspan="2">지급불가 사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기본
보조금</td><td>기본</td><td colspan="5">원 (₩)</td></tr>
<tr><td>저감장치
부착불가</td><td colspan="5">원 (₩)</td></tr>
<tr><td colspan="2" rowspan="3">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td><td>신차</td><td colspan="4">원 (₩)</td></tr>
<tr><td>중고차</td><td colspan="4">원 (₩)</td></tr>
<tr><td colspan="5">※ 폐차되는 차량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전기·수소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에 50만원을 더하여 지원 가능(단, 상한액 범위내)</td></tr>
</table>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조기폐차 우선 이행 대상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별도 실시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별지 3호 서식]

<table>
<tr><td>확인번호
</td><td colspan="6">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전화번호</td><td></td><td>FAX</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등록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 자동차
☐ 건설기계</td><td colspan="5">☐연식(　　)년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5">☐차량명(건설기계명) :</td></tr>
<tr><td colspan="3">정원(승합) :　　명</td><td colspan="2">규격(건설기계) (　　)</td></tr>
<tr><td colspan="6">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 rowspan="14">확
인
항
목</td><td>동일성
확인</td><td colspan="2">-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td><td rowspan="14">확
인
결
과</td><td colspan="2">☐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td></tr>
<tr><td>원동기</td><td colspan="2">- 원동기(시동)작동 여부</td><td colspan="2">☐ 가 능　☐ 불 가</td></tr>
<tr><td>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td><td colspan="2">-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td><td colspan="2">☐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td></tr>
<tr><td>조 향</td><td colspan="2">- 좌·우 작동 여부</td><td colspan="2">☐ 가 능　☐ 불 가</td></tr>
<tr><td>제 동</td><td colspan="2">- 제동 가능 여부</td><td colspan="2">☐ 가 능　☐ 불 량</td></tr>
<tr><td rowspan="3">유압장치
(건설기계)</td><td colspan="2">-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td></tr>
<tr><td colspan="2">-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td></tr>
<tr><td colspan="2">-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td></tr>
<tr><td rowspan="5">그외 주요
부품</td><td>- 차제 외관 상태</td><td rowspan="5">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td></tr>
<tr><td>- 완충장치 상태(차량)</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td></tr>
<tr><td>- 유리창 파손 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일부파손)</td></tr>
<tr><td>-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td><td colspan="2">☐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td></tr>
<tr><td>- 등화장치 설치 상태</td><td colspan="2">☐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일부 깨짐)</td></tr>
<tr><td>첨부물</td><td colspan="3">사진 4매(전・후・좌・우면), ※ 온라인 이용시 동영상 첨부</td></tr>
<tr><td rowspan="2">판 정
결 과</td><td>정상 가동 여부</td><td colspan="5">☐ 가　☐ 부</td></tr>
<tr><td>불가 사유</td><td colspan="2"></td><td>종합의견</td><td colspan="2"></td></tr>
</table>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별지 4호 서식]

<table>
<tr><td>확인번호
</td><td colspan="5">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FAX</td><td></td></tr>
<tr><td rowspan="6">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차대번호</td><td></td></tr>
<tr><td rowspan="3">□ 자동차
□ 건설기계</td><td colspan="4">□연식( )년 □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2">정원(승합) : 명</td><td colspan="2">규격(건설기계) ( )</td></tr>
<tr><td colspan="4">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등록일자(차령)</td><td colspan="4">년 월 일 (년 월)</td></tr>
<tr><td>주행거리</td><td colspan="2"></td><td>사용연료</td><td></td></tr>
<tr><td>보조금신청금액</td><td colspan="4">원 (₩)</td></tr>
<tr><td>폐차</td><td>말소 일자</td><td colspan="2"></td><td>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td><td></td></tr>
<tr><td rowspan="5">폐차 후
신차구매</td><td rowspan="4">자동차(건설기계)
제원</td><td colspan="4">□연식( )년 □ 배기량( )CC</td></tr>
<tr><td colspan="4">□차량명(건설기계명) :</td></tr>
<tr><td colspan="4">정원(승합) : 명</td></tr>
<tr><td colspan="4">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등록일자(예정)</td><td colspan="4">년 월 일 (년 월)</td></tr>
</table>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5호 서식]

고창군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고창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창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 성 명 (서명)

[별지 6호 서식]

<table>
<tr><td>확인번호

</td><td colspan="5">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FAX</td><td></td></tr>
<tr><td rowspan="6">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td><td>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차대번호</td><td></td></tr>
<tr><td rowspan="3">자동차(건설기계)
제원</td><td colspan="4">□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td></tr>
<tr><td colspan="4">□차명 :　　□ 정원(승합) :　　명</td></tr>
<tr><td colspan="4">□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td></tr>
<tr><td>등록일자(차령)</td><td colspan="4">년　월　일 (　년　월)</td></tr>
<tr><td>제작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d>사용연료</td><td></td></tr>
<tr><td>추가
보조금신청금액</td><td>□ 신차</td><td>□ 중고차</td><td colspan="2">원 (₩　　)</td></tr>
<tr><td rowspan="2">폐차 관련</td><td>등록번호</td><td colspan="2"></td><td rowspan="2">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td><td rowspan="2"></td></tr>
<tr><td>말소 일자</td><td colspan="2"></td></tr>
</table>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구매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 회수될 수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공동명의와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참고 1]

위 임 장

(공동명의 및 법인명의(지입차량)인 경우 작성)

수 임 자 (신청자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3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고창군수 귀하

[참고 2]

포 기 서

신 청 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대상차량정보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포기사유		□ 상기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 □ 향후 조기폐차 예정 □기타( )	

상기 신청자는 2023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기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할 것이며 차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3년 월 일

포 기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고창군수 귀하

[참고 3]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촬영 매뉴얼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동영상·사진 촬영 매뉴얼

□ **동영상·사진 촬영 방법**(주기장 등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 **"휴대폰"**으로 촬영)

< 동영상·사진 촬영 상세 매뉴얼 >

구분	굴착기	지게차
사진 촬영 (5매)	① **"운전자"**는 건설기계에 탑승 후 **원동기**(시동)를 **작동** 시킨다.	① **"운전자"**는 건설기계에 탑승 후 원동기(시동)를 작동 시킨다.
	② "촬영자"는 원동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운전석 전면, 좌측면, 후면, 우측면, 차대번호를 순서대로 사진을 촬영한다.	② **"촬영자"**는 원동기가 작동된 상태에서 운전석 **전면, 좌측면, 후면, 우측면, 차대번호**를 순서대로 **사진**을 촬영한다.
동영상 촬영 (2분 이내)	③ "운전자"는 버킷·붐 등(상승, 하강 필수)을 1회 이상 작동시킨다.	③ **"운전자"**는 **쇠스랑(상승, 하강 필수)**을 **1회** 이상 **작동**시킨다.
	④ "운전자"는 전진(5m)→ 정지, 후진(5m)→ 정지하고 턴테이블을 1회 회전시킨 후 정지한다.	④ **"운전자"**는 전진(5m)→정지, 후진(5m) 이동 후 정지 한다.
	⑤ "촬영자"는 촬영을 마치고,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⑤ "촬영자"는 촬영을 마치고, 파일 저장 상태를 확인한다.
⑥ www.escar.or.kr 접속하여 동영상·사진을 등록한다.		⑥ www.escar.or.kr 접속하여 동영상·사진을 등록한다.

< 유의 사항 >

◎ 공간 확보가 되고 위험요소가 없는 환경에서 원동기를 작동 시키고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한다.(휴대폰의 GPS, 사운드 기능은 ON)

◎ 사진은 식별(외관, 번호판, 차대(일련)번호 등)이 가능하도록 5매(전·후·좌·우·차대번호)를 촬영 한다.

◎ 동영상은 작동 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서 촬영 한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시 화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굴착기 사진 촬영 예시 >

❶ 정면	❷ 후면
❸ 측면1	❹ 측면2
❺ 차대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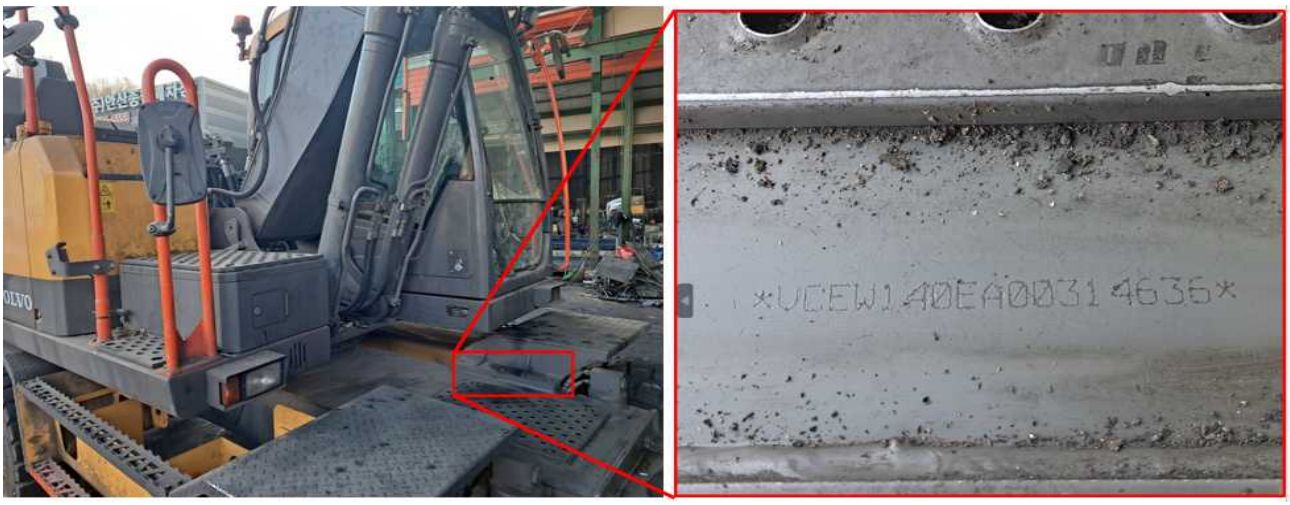	

< 지게차 사진 촬영 예시 >

❶ 정면	❷ 후면
❸ 측면1	❹ 측면2
❺ 차대번호	

< 굴착기, 지게차 동영상 촬영 예시 >

동영상	
굴 착 기	
지 게 차	

[참고 4] 대상차량 확인 체크 리스트

대상차량 확인 체크 리스트(굴착기)

날짜		차량 번호		차종		검사장소	

1. 동일성 확인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동일성 확인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는 건설기계 검사증과 일치하고 봉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사항과 동일함을 확인	차대일련번호 또는 등록번호 동일성 확인	

2. 원동기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원동기 작동	원동기가 정상 작동 되어야 함	원동기의 심한 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 확인	원동기 작동여부	

3.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주행조향 제동장치	조형장치 및 제동장치 정상작동 되어야 함	주행·조향·제동장치의 전후 움직임, 제동 확인	전·후, 주행 여부	
			주행 중 제동 여부	

4. 유압장치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유압 장치	유압장치가 정상 작동되어야 함	붐, 암, 작동상태와 정상 기능을 확인	유압장치 작동가능 여부	

5. 차체 및 하체부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1) 트랙 및 롤러 (궤도식)	트랙롤러스프로캇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변형이 없을 것	각 부품들의 파손 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운행 가능 여부	
2) 휠·타이어 (바퀴식)	차축의 외관 및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것	차축의 외관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손상 및 장착 여부를 확인	차축외관 및 타이어 손상이 심하여 정상기능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3) 턴테이블	회전 가능 및 회전 후 정지가 되어야 함	턴테이블 회전상태 이상 유무 확인	선회 작동 및 제동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6. 작업장치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버킷 등, 붐, 암	버킷 등 붐, 암은 심한 균열과 변형이 없으며 정상 작동이 되어야함	버킷 등, 붐, 암의 정상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	버킷 등 작업용 장치의 심한 균열 및 장착 여부 확인	

버킷	유압가위	리퍼	집게	유압브레이커

7. 등화장치 및 표지류 확인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등화장치	설치된 등화(작업 등)는 정위치에 부착되어 정상 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부착된 등화(작업등)의 파손·설치상태를 확인	등화(작업등)는 50%이상 정상 부착되어있어야함	

대상차량 확인 체크 리스트(지게차)

날짜		차량 번호		차종		검사장소	

1. 동일성 확인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동일성 확인	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는 건설기계 검사증과 일치하고 봉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사항과 동일함을 확인	차대일련번호 또는 등록번호 동일성 확인	

2. 원동기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원동기 작동	원동기가 정상 작동 되어야 함	원동기의 심한 진동 및 이상음 발생 여부 확인	원동기 작동여부	

3. 동력전달장치, 조향, 제동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주행·조향, 제동장치	조형장치 및 제동장치 정상작동 되어야 함	주행·조향·제동장치의 전후 움직임, 제동 확인	전·후, 주행 여부	
			주행 중 제동 여부	

4. 유압장치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유압 장치	유압장치가 정상 작동되어야 함	마스트 및 쇠스랑 작동상태와 정상 기능을 확인	유압실린더 손상 (작동 가능 여부)	

5. 차체 및 하체부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휠타이어	차축의 외관 및 타이어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것	차축의 외관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손상 및 장착 여부를 확인	차축외관 및 타이어 손상이 심하여 정상기능이 불가능할 경우 불합격	

6. 작업장치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쇠스랑 마스트	마스트 및 쇠스랑이 심한 균열과 변형이 없으며 정상 작동이 되어야함	마스터 및 쇠스랑의 정상 설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	마스트·쇠스랑 상승·하강 작동 확인	

7. 등화장치

구 분	확 인 기 준	확 인 방 법	판정 기준	판정 (O,X)
등화장치	설치된 등화(작업 등)는 정위치에 부착되어 정상 가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부착된 등화(작업등)의 파손·설치상태를 확인	등화(작업등)는 50%이상 정상 부착되어 있어야함	

[참고 5] 인터넷 접수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 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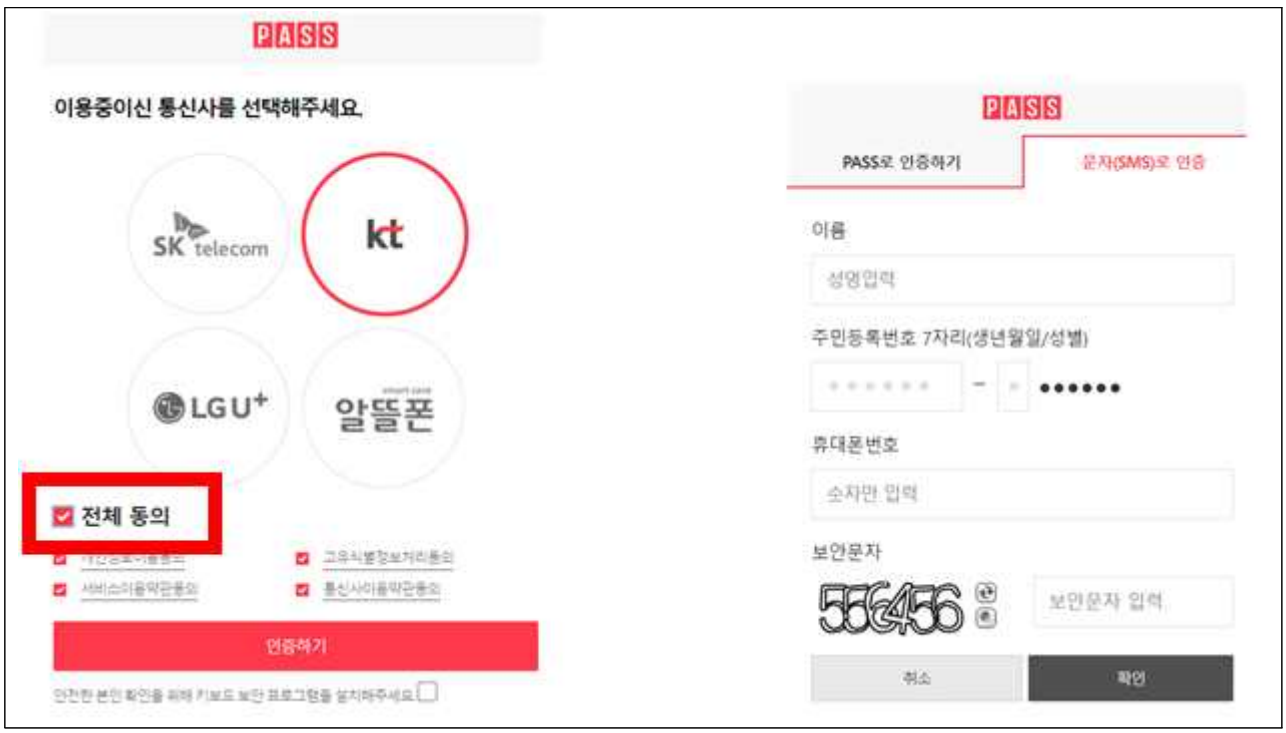

순서2) 회원가입 후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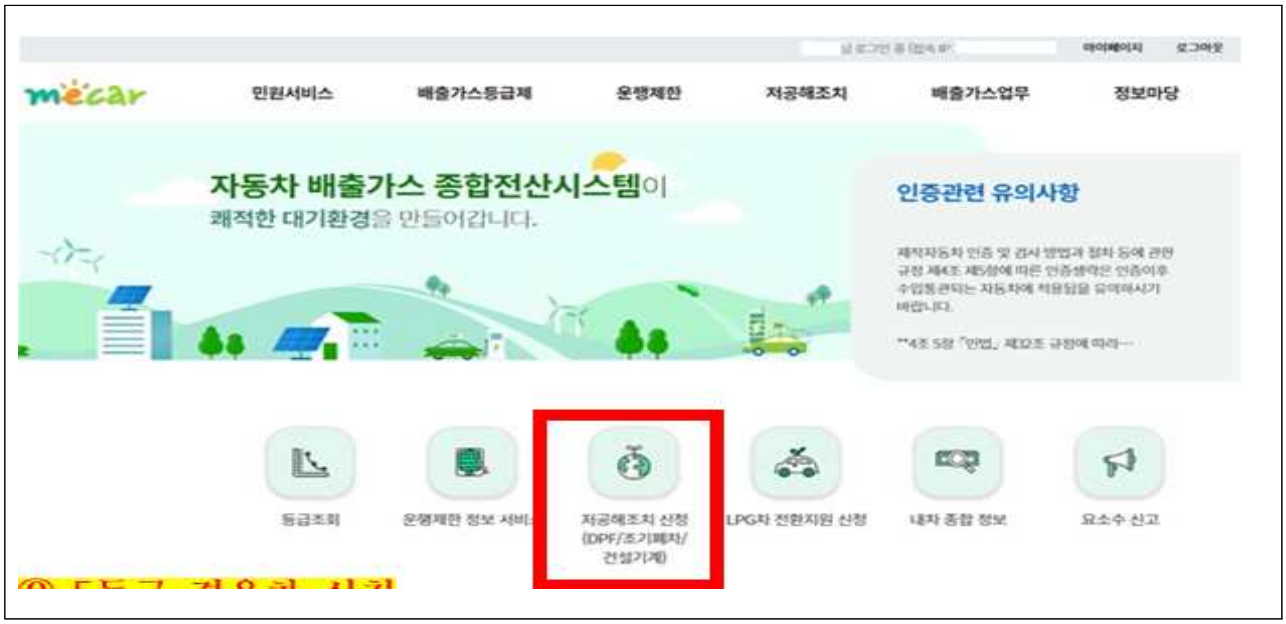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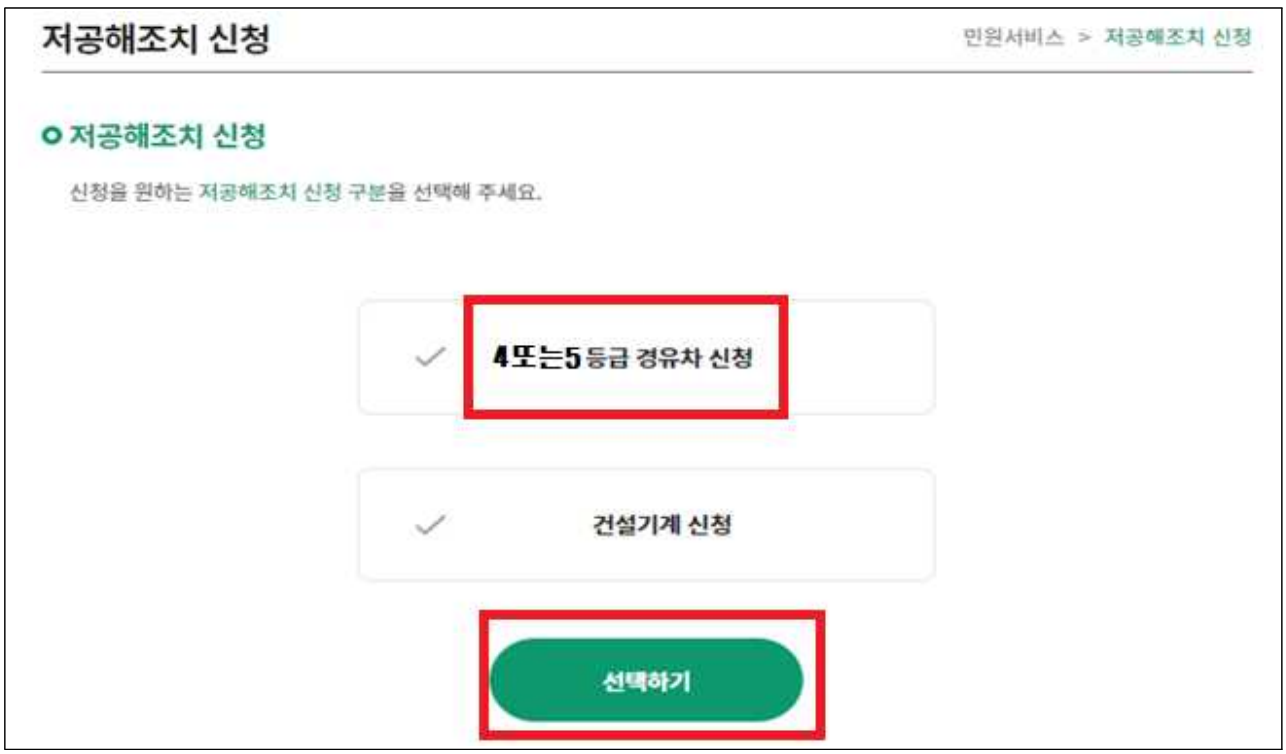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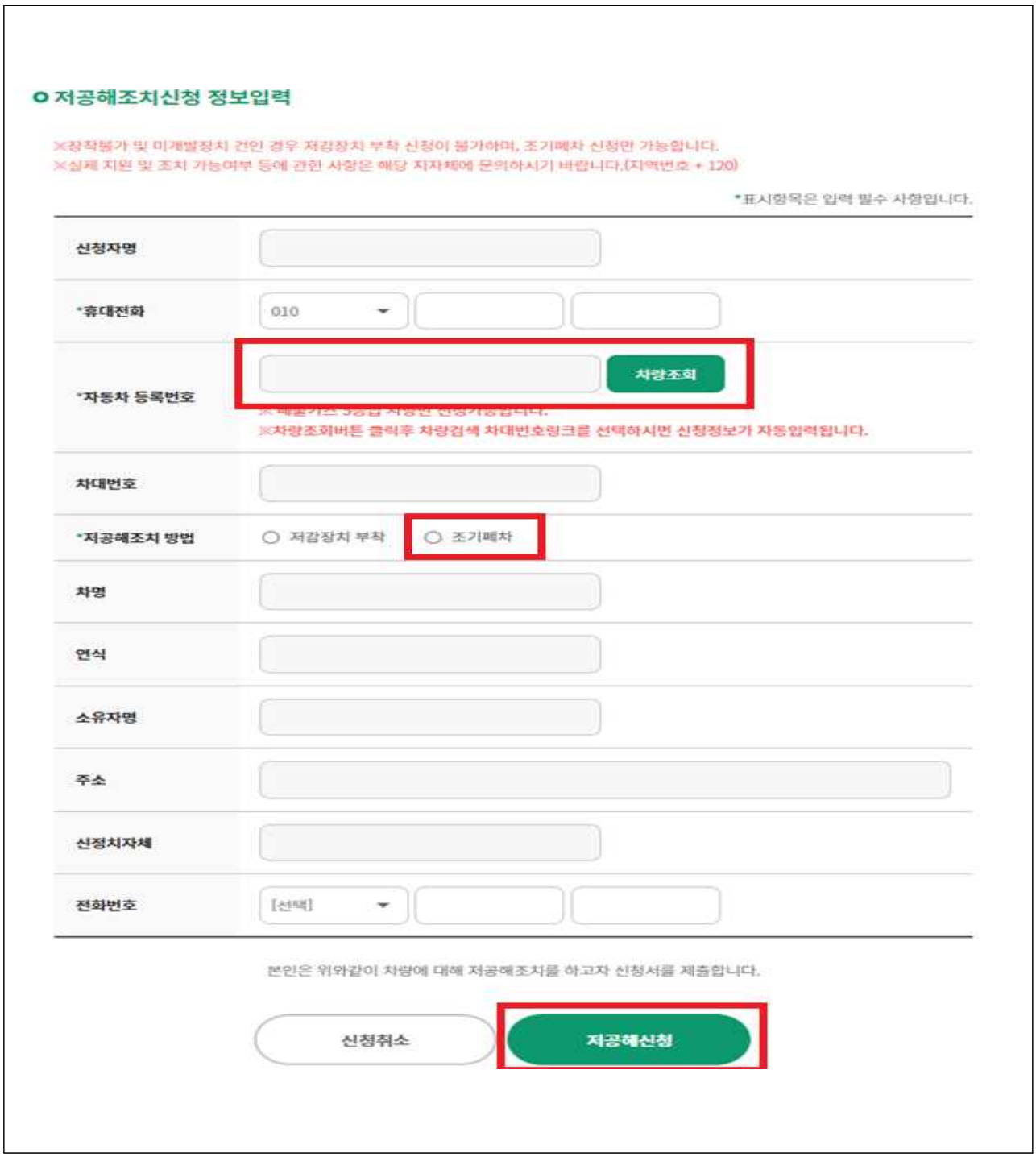

※ 법인신청 방법

- 회원가입 : 회사직원이 일반회원으로 가입
- 차량신청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동의 클릭 ⇒ 차량조회 ⇒ **차량번호 조회 팝업창에서 1번 항을 법인으로 변경** 후 순서대로 진행

[참고 6] 차량 등급 조회(4등급 차량 DPF 부착여부)

순번	구분	MECAR 화면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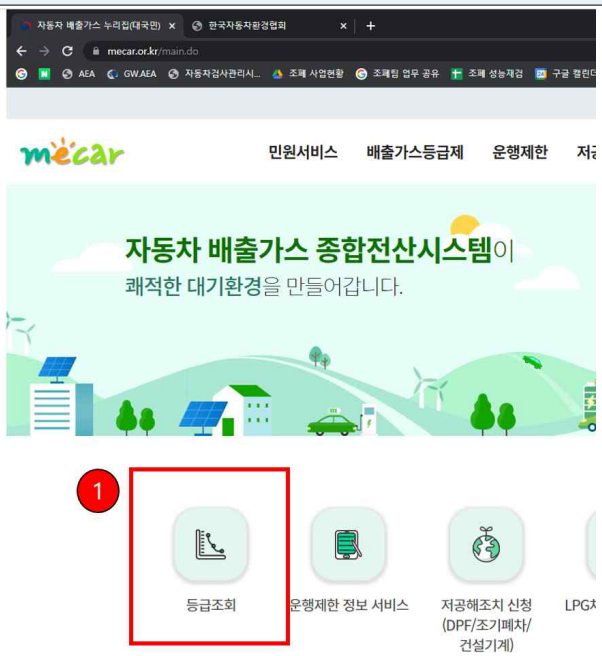
2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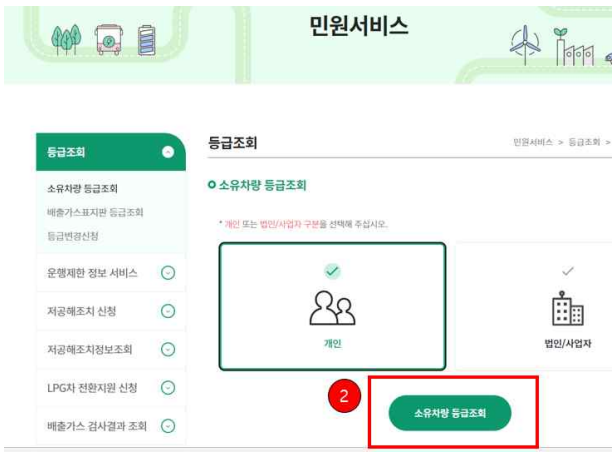
3	❸차량번호 입력	

4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❺휴대폰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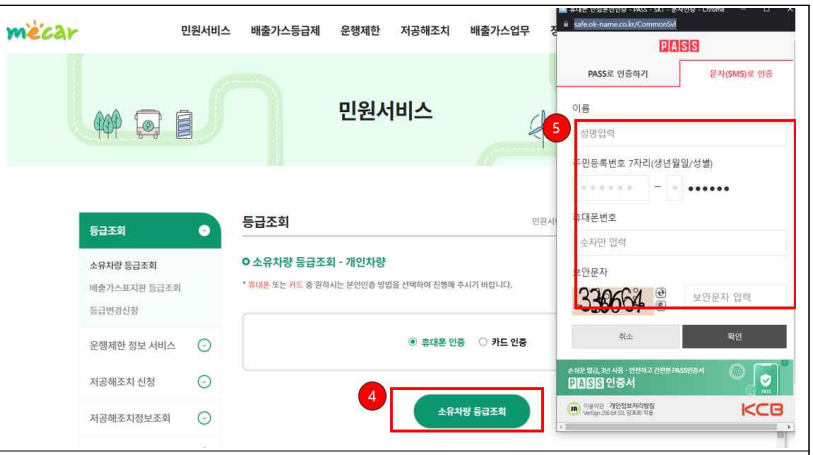
5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